

#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前·後 사례 예시

사례 1 「아차사고 분석 → 재발방지대책 마련 → 시설개선」 사례

## [개편 前]

- A사업장은 매년 2~3차례 끼임사고로 인한 경미한 피해가 반복 발생
  - 위험성평가를 매년 1차례 실시하고 있으나, 안전관리자 중심으로만 실시
    - 공장 내 관계 공정·작업에 대해 유해·위험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발생 빈도와 발생 강도를 계산하여 위험성 추정·결정
  - X기계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, 발생 강도가 낮게 측정되어 종합적인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,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
- ⇒ 결국, X기계 작업 중 끼임 사고사망 발생

## [개편 後]

- ① 안전관리자, 관리감독자, 근로자대표가 합동으로 기존 사고사례를 토대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유해요인 파악
  - ② 특히, X기계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,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집중 → 자동방호장치(인터락) 설치 결정
  - ③ A사업장에서 Y기계와 Z기계로 인한 사고는 없었지만,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,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Y·Z기계에도 자동방호장치 설치를 결정
  - ④ A사업장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'안전 리모델링 사업'에 신청하여, 설치 금액의 50%까지 지원받아 큰 부담 없이 자동방호장치를 설치
- ⇒ 자동방호장치 설치 이후에는 X, Y, Z기계로 인한 사고 미발생

## 사례 2 「공동안전보건관리자 → 작업절차 개선 → 스마트 장비 활용」 사례

### [개편 前]

- □□산단 내 B사업장(물류센터, 근로자수 35인)은 안전보건관리전담자가 없고, 안전담당자도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,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  - 지게차에 작업자가 부딪히는 등 지게차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자, 사고예방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였으나, 신호수도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 발생
  - 한편, 물류센터에서는 사다리를 활용하는 작업이 잦은데, 이 작업은 단순 작업이라고 생각하여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
- ⇒ 결국,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발생

### [개편 後]

- 1 B사업장은 □□산단 내 '안전보건지원센터'를 통해 공동안전보건 관리자의 지원을 받게 되었음
  - 2 공동안전보건관리자 K씨가 순회점검 등을 통해, 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①작업자와 지게차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방식 상의 문제, ②지게차 자체의 문제로 부딪힘 사고가 다발 하는 것으로 파악
    - 이에, ①작업동선을 분석하여 지게차와 작업자가 다니는 구역을 구분하였고, ②스마트 안전 시설·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작업자가 일정반경 내에 들어오면 지게차가 멈추도록 하는 충돌방지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받아 큰 부담 없이 장비를 설치함
  - 3 사다리 작업에 대해서는 OPS\*(One Point Sheet) 방식 위험성평가를 통해, ①사다리 전도, ②보호장비 미착용 등으로 인해 사고 시 부상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
- \* 사다리,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
- 이에, ①전도방지장치가 있는 사다리만 사용토록 조치, ②안전모 착용 지도·권고, ③외진 곳에서 작업 시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, ④사다리 작업 전 반드시 작업반장에게 신고하고 TBM(작업 전 안전교육)을 통해 작업자에게 사전에 위험과 주의조치 등을 교육토록 시스템화
- ⇒ 이러한 작업절차 개선, 스마트 장비 활용 후에는 지게차, 사다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